

중동 경남아너스빌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부산광역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온라인(PC·모바일)청약 | 순번추첨 동호지정 | 공고일 : 2026. 08. 12.]

□ 분양대상 : 중동경남아너스빌 11호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32]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매각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매각공고문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

- 이 주택의 매각공고일은 **2026.08.12(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번 공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하는 중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준공 : 2012년)의 재개발매입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발생한 공가세대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우리공사(LH)가 2012년도에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는 주택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내부를 확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발견되는 시설물(디지털 도어락, 도시가스, 샷시, 수도,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공동현관 카드리, 전기·전자제품,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및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매각공고일(2026.08.12.)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매각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제)됩니다.(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 대상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순번대로 동호지정 후 계약합니다. 동호지정 이후 잔여 동호가 남아 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동호지정 순번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매각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2조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현장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당첨자(계약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계약할 경우 계약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기간 내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후 공급조건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일정 (서류접수처 및 상세일정 공고문 하단 참조)

신청접수	예비순번발표	서류제출 (예비순번당첨자)	주택개방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26.08.24.(월)~ 08.26.(수) 10:00~16:00	'26.08.27.(목) 13:00이후	'26.08.27.(목)~ 09.01.(화)	'26.09.10.(목) 13:00~16:00	'26.09.11.(금) 10:00 (예비순번1~11)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당첨/낙찰 조회	서류미제출시 계약불가	자격검증 적격세대	LH 임대공급운영팀 4층

* 예비12번이후 계약은 2026.09.11.(금) 선순번 예비자 계약체결 후 잔여세대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

I

분양가격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1.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32 (중동 1788)

■ 공급호수 : 11호

단지	동	호	세대 당 계약면적(㎡)					분양가격(원)			최고 층수	난방 방식	준공
			공급면적			기타 공용	합계	계	계약금 (10%)	잔금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중동경남 아너스빌	103	2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06,500,000	30,650,000	275,850,000	25~28	지역 난방	2012
	103	3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09,500,000	30,950,000	278,550,000			
	103	6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16,000,000	31,600,000	284,400,000			
	103	7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21,000,000	32,100,000	288,900,000			
	103	8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21,000,000	32,100,000	288,900,000			
	103	11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23,000,000	32,300,000	290,700,000			
	103	12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23,000,000	32,300,000	290,700,000			
	103	16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23,000,000	32,300,000	290,700,000			
	103	20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23,000,000	32,300,000	290,700,000			
	103	22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23,000,000	32,300,000	290,700,000			
103	2704	39.6602	36.0131	75.6733	21.8060	97.4793	321,000,000	32,100,000	288,900,000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2. 분양대금 납부 방법

■ 분양대금은 ①계약금 + ②잔금 + ③관리비에치금으로 구성됩니다. [분양대금 전액 완납 후 입주 가능함]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 국민 561801-95-200380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계약자명으로 입금)

① 계 약 금 : 계약체결 당일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

② 입주잔금 :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일시납(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납부(계약자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택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 소유권이전서류 준비를 위하여 잔금납부일 **최소 10일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해제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 연 7.5% (추후 변동 가능)]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③ 관리비에치금 납부 문의 : 경남아너스빌 관리사무소 ☎ 051-742-9006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은 관리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에치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관리비는 세대 비밀번호 개별 안내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내 미 입주 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2026.08.12.)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기준(분리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으로 하며,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부적격) 처리
- ※ 거주 및 나이 요건도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3조 관련)

아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으로 주택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나.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2. 청약신청 및 순번당첨자 발표

■ 청약신청 : 2026. 08. 24.(월) ~ 08. 26.(수) 10:00~16:00

- 청약은 인터넷으로 진행하며(현장접수 불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청약)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시 인증이 필요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받으시거나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인증 : 네이버, 토스, KB 신한, 카카오뱅크, 삼성패스, NH, 하나, 우리, 뱅크샐러드, 통신사PASS, IBK, 카카오뱅크 총 13종, 이하 '간편인증 13종')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 구분(무순위 공급)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 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인터넷 연결 오류 등으로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접수할 수 없음을 유의바랍니다.
- *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반드시 매각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사 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접수 시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순번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순번당첨자에 한해 검증하며,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자격확인 결과 신청내역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동호지정 예비순번 발표 : 2026. 08. 27.(목) 13:00 이후

- 동호지정 예비순번은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동호지정 예비순번 당첨자 명단은 아래 경로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예비자명단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공급세대수의 5배수를 예비순번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번 예비자의 계약포기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및 계약체결 예정이며 계약이 완료된 경우 예비순번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3. 순번당첨자 서류제출 및 결과 안내

- 무주택 검증 서류제출 : 예비순번당첨자는 기간 내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하여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제출기간	2026. 08. 27.(목) ~ 09. 01.(화) 18:00 * 방문 및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장소	(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4층 임대공급운영팀 일반매각 담당자 앞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08.12 이후 발급분(원본))에 한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포함(전부표기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된 공사 양식 사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하여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④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사항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가능) ⑥ 무주택 서약서 (본인작성)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팩스발송 등 사본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방문접수 혹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마감일(2026.09.01.)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합니다.(동의서 양식은 LH청약플러스 입주자모집공고에 별도 첨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검증 결과 안내

- 검증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개별 안내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및 제 53조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해당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적격 소명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은 6쪽 참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명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일이 변경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로 소명 불가하여 부적격 확정될 경우 **계약 불가**합니다.

4. 주택개방

■ 주택개방 안내 (자격심사 적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 일시 : 2026.09.10.(목) (주택개방시간 13:00~16:00)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26.09.11.(금) 10:00

- 예비순번 1번 ~ 11번 : 오전10시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계약 (순번호명시 자리에 없을 경우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부여)
- * 2026.09.11.(금)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순번(12번이후)에 따라 계약일정 개별 안내 예정이며, 잔여주택 소진시 예비순번 지위는 소멸됨.

■ 계약시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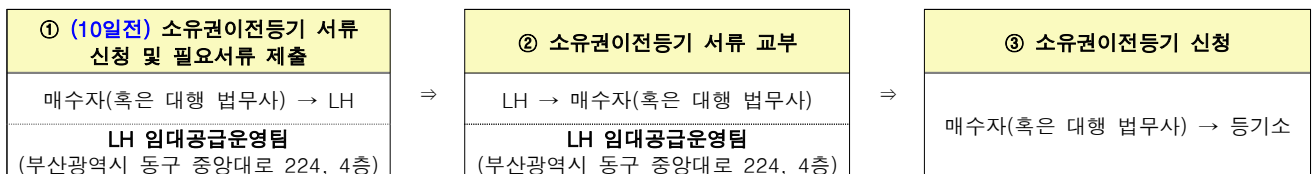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 현장수납 불가(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동·호지정후 LH 지정계좌로 계약자명으로 입금 ※ 납부 계좌번호 : 국민은행 561801-95-200380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②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③ 계약자 도장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 가능)
	④ 주택상태 확인서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불가, 계약 장소에 비치)
대리계약 시 추가 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본인 계약 시 서류와 함께 제출	①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도장과 동일한 인감도장 날인)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계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계약체결 후 해약 시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이 발생**합니다.
- 무주택 자격검증 결과 수신에 따라 계약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일이 변경될 경우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각 순번별 도착시간 내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최상위순번부터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불가) 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자를 3회 이상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잔여동호가 남아 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이 경우도 당일 계약체결 마감시한 16시까지 계약하여야 함)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 당일 16시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 시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 시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이 발생**합니다.
- 각종 사유로 인한 도착 지연시 불이익은 청약신청자의 책임으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III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 이 주택은 입주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인지세법」에 따라 수분양자와 분양자(LH)가 균등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의 경우 수분양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되, 분양자(LH)의 인지세 부담액(1/2)은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 등기서류 교부후방일로부터 **최소 10일 전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이 필요하오니 대출실행, 등기신청업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 LH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T.051-460-6846)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담당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 진행하므로,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II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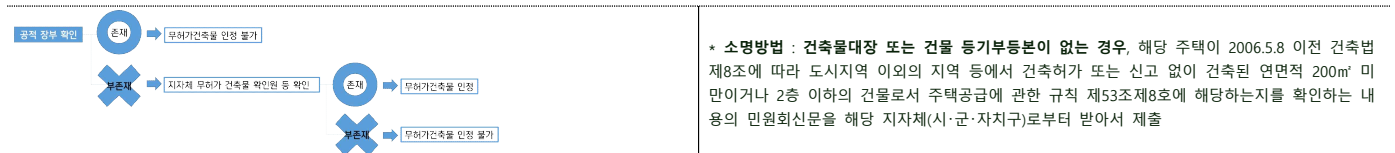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 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참고) 무허가건축물 확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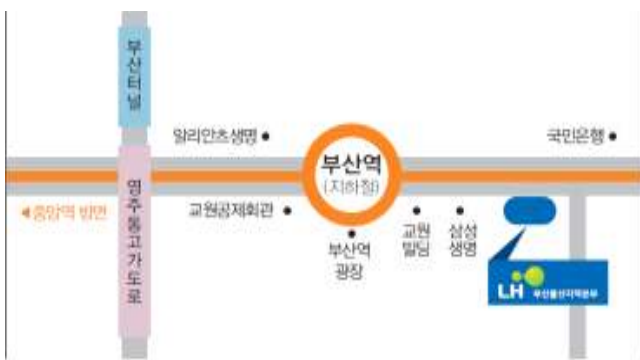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III 기타 유의사항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별도의 보수 없이 현재 상태로 계약자에게 분양되는 주택으로 금번 분양주택의 가격은 건물의 노후화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가격이므로 시설물의 교체, 추가설치 또는 수선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개별안내 사항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전화번호 또는 주소로 안내되므로, 연락처 및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LH 부산울산 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에 계약 체결을 할 경우 당해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후라도 자격 부적격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취소되며, 서류의 결격 및 위조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이 신청한 내역에 대한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본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잔금 납부기한(입주 잔금 납부 기한 이전에 입주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 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진행합니다.
- 입주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고 절차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 후 미분양 세대는 추후 공급조건(가격, 납부조건 등)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계약체결 장소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4층 임대공급운영팀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1호선 부산역 삼성생명 옆(6번 출구)

분양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LH 임대공급운영팀 051-460-6868, -6846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2026. 08. 12.

LH 부산울산지역본부